

#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1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
- 나.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92년 건립, 9차에 걸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2조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  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
  - 소재지 :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(영등포동 7가 57)
  - 시설규모 : 연면적 3,321.6㎡(지하1층~지상5층)
  - 개관일 : 1992. 11. 3.
  - 수탁자 :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
  - 위탁기간 : 2014. 9. 25.~2017. 9. 24.(9차)
  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

## 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9.25. ~ 2020.9.24.)
- 위탁업무
  -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지원
  - 교육사업(노동인권, 노동법, 성인지 등)
  -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복리향상 사업 등
  -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소요예산('18년) : 3,410천원(시설 유지·보수비)
  - ※ 운영비용은 수탁업체 부담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## 라.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경과

- '89.03.02 :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
- '90.02.13 :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(시장방침 제 346호) 수립
- '92.10.15 : 서울시근로자복지관(영등포동 7가 57) 준공(11.13 개관)
- '92.09.25 :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 (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)
- 위탁계약(재계약)체결 현황
  - 민간위탁계약 1차 : '92.09.25 ~ '93.09.24(1년)
  - 민간위탁계약 2차 : '93.09.25 ~ '96.09.24(3년)
  - 민간위탁계약 3차 : '96.09.25 ~ '99.09.24(3년)

- 민간위탁계약 4차 : `99.09.25 ~ `02.09.24(3년)
- 민간위탁계약 5차 : `02.09.25 ~ `05.09.24(3년)
- 민간위탁계약 6차 : `05.09.25 ~ `08.09.24(3년)
- 민간위탁계약 7차 : `08.09.25 ~ `11.09.24(3년)
- 민간위탁계약 8차 : `11.09.25 ~ `14.09.24(3년)
- 민간위탁계약 9차 : `14.09.25 ~ `17.09.24(3년)

#### 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로자 및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
- 노동단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로서 노동전문가 확보, 조직 인프라 확보, 노동상담, 법률지원 등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기능이 노동단체의 고유기능으로서 복지관 수탁자로서 적합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

**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**제11조(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)**

-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3조(설치운영)**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 서울특별시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| 명 칭            | 기 능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  | 근로자 복지증진        |
|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| 근로자 복지증진        |
| 서울노동권익센터       |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|

**제6조(관리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**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김민하 (☎ 2133-5426)

# 민간위탁 성과보고서(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)

## □ 민간위탁사업 개요

- 추진근거 :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
- 사업내용 :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 및 복지관 시설유지관리
- 추진경과
  - `89.03.02 :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건립 건의
  - `90.02.13 :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립계획(시장방침 제 346호) 수립
  - `92.10.15 : 서울시근로자복지관(영등포동 7가 57) 준공(11.13 개관)
  - `92.09.25 :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체결 (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)
  - 위탁계약(재계약)체결 현황
    - 민간위탁계약 1차 : `92.09.25 ~ `93.09.24(1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2차 : `93.09.25 ~ `96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3차 : `96.09.25 ~ `99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4차 : `99.09.25 ~ `02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5차 : `02.09.25 ~ `05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6차 : `05.09.25 ~ `08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7차 : `08.09.25 ~ `11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8차 : `11.09.25 ~ `14.09.24(3년)
    - 민간위탁계약 9차 : `14.09.25 ~ `17.09.24(3년)

## ○ 사업현황

-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
- 소 재 지 :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(영등포동 7가 57)
- 시설규모 : 연면적 3,321.6㎡(지하1층~지상5층)

| 구 분   | 연면적     | 사무실 | 노동<br>법률센터 | 회의실  | 어린이집 | 대강당 | 기 타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
| 면적(㎡) | 3,321.6 | 980 | 33.5       | 67.2 | 676  | 455 | 1,109.9 |

- 개 관 일 : 1992. 11. 3.
- 수 탁 자 :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
- 위탁기간 : 2014. 9. 25.~2017. 9. 24.(9차)
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근로자 및 산하 노동조합 조합원

## □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

### ○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

(단위 : 명)

| 사업명             | 계      |       | 2014년 |       | 2015년 |       | 2016년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| 회수     | 인원    | 회수    | 인원    | 회수    | 인원    | 회수    | 인원    |
| 법률지원사업계         | 3,945  | 9,645 | 1,240 | 2,562 | 1,399 | 3,280 | 1,305 | 3,803 |
| 노동법률 상담         | 3,608  | 3,608 | 1,138 | 1,138 | 1,297 | 1,297 | 1,173 | 1,173 |
| 테마별 노동법 강좌      | 79     | 1,362 | 24    | 135   | 25    | 497   | 30    | 730   |
| 현장방문교육          | 77     | 2,706 | 24    | 680   | 19    | 684   | 34    | 1,342 |
| 취약지구 과건 무료법률 상담 | 180    | 1,968 | 54    | 609   | 58    | 802   | 68    | 558   |
|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     | 2,100권 |       | 700권  |       | 700권  |       | 700권  |       |

### ○ 시설 운용 실적

(단위 : 명)

| 시설명  | 계     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비고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어린이집 | 4,068  | 1,356 | 1,356 | 1,356 |    |
| 대강당  | 14,730 | 5,960 | 4,800 | 3,970 |    |
| 회의실  | 4,313  | 1,297 | 1,452 | 1,564 |    |

### ○ 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실적

| 연도별   | 사업명 (사업계획)           | 추진 실적  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2014년 |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 | ·화장실 세면기, 소변기, 좌변기 교체<br>·화장실 및 기계실 전기실 방진도색<br>·급수용 펌프 교체 및 부대설비 공사          |    |
| 2015년 |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 | ·온수 보일러 설치 공사<br>·냉난방보일러 세관 및 정화조 펌프교체<br>·승강기 부품 교체공사<br>·전기중앙분전반 교체공사       |    |
| 2016년 |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 | ·시수 배관 및 정화조 펌프교체<br>·사무실 형광등 및 다운라이트LED교체공사<br>·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청소<br>·옥상방수 작업 |    |

### ○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천원)

| 사업명              | 2014년  |        | 2015년  |        | 2016년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예산액    | 집행액    | 예산액    | 집행액    | 예산액    | 집행액    |
|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| 43,065 | 43,065 | 75,350 | 75,350 | 62,420 | 62,420 |

## 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### ○ 성과평가 결과 요약

-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동상담 서비스는 인근지역을 벗어나 상담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운영 필요
- 어린이집 운영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업
- 노조원 뿐만 아니라 식당, 청소, 알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인 취약계층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

### ○ 개선계획

- 자치구 근로자복지센터와의 연계, 서울지역 법률지원사업 시스템 완성 등
-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대변사업 집중 시행
- 계층과 내용의 차별성에 입각한 다양한 근로자 교육사업 전개